

漁港法改正 試案을 본다

1969년 5월 9일에 제정 시행된 '어항법'이 실로 20년만에 개정됩니다. 수산청은 그 동안 변화된 어업여건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어항을 어촌발전을 위한 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어항법개정에 착수했고, 전문 33조 부칙으로 된 시인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본지가 단독 입수한 개정시안으로서 전문을 게재합니다(편집자·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第1條(目的) 이 법은漁港의指定과施設 및 管理에 관한事項을 規定함으로써漁港의開發을促進하고 그利用과管理의適正을圖謀하여水產業發展에寄與하게함을目的으로한다.</p> <p>第2條(定義) ①이 법에서“漁港”이라함은天然 또는人工의漁業根據地가되는水域 및 陸域과漁港施設로서第4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指定된것을말한다. ②이 법에서“漁港施設”이라함은漁港區域안에있는다음의各施設을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基本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外廓施設：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水堤·水門·閘門·護岸·堤防·突堤 및 胸壁 나. 繫留施設：岸壁·物揚場·繫船浮標·繫船杭·棧橋·浮棧橋·船着場 및 船揚場 다. 水域施設：航路 및 泊地 2. 機能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輸送施設：鐵道·道路 및 橋梁 나. 航行補助施設：航路標識·信號施設 및 照明施設 다. 漁港施設用地：漁港施設의 敷地 라. 漁船漁具保全施設：漁船修理場·漁船機關修理場 및 漁具乾燥場 마. 補給施設：給水 및 紙油施設 <p>(新 設)</p>	<p>第1條(目的) 이 법은漁港의指定과施設 및 管理에 관한事項을 規定함으로써漁港의開發을促進하고 그utilization과management의適正을圖謀하여水產業의振興과漁村地域社會發展에寄與하게함을目的으로한다.</p> <p>第2條(用語의 定義) ①이 법에서“漁港”이라함은natural 또는artificial的漁業根據地가되는水域 및 陸域과漁港施設로서第4條第1項의規定에의하여指定된것을말한다. ②이 법에서“漁港施設”이라함은漁港區域안에있는다음의各施設을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基本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外廓施設：(현행과 같음) 나. 繫留施設：(현행과 같음) 다. 水域施設：(현행과 같음) 2. 機能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輸送施設：(駐車場, 해리포-트施設追加) 나. 航行補助施設：(현행과 같음) 다. 漁港施設用地：(현행과 같음) 라. 漁船漁具保全施設：(현행과 같음) 마. 補給施設：(給水, 紙油施設追加) 바. 增·養殖用施設：水產物蓄養施設, 水產種苗生產施設, 養殖用飼料保管調製施設, 養殖用作業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產業發展을“水產業의振興”으로하고漁港建設이漁村地域社會發展에寄與한바크므로“漁村地域社會發展”을追加 ○漁港機能多樣화에對備한各種施設根據 마련 -漁港을中心으로한漁獲物運搬手段變化豫想對處 -漁港機能遂行에必要 -活魚流通增加豫想等으로蓄養施設,種苗生產施設等과漁港施設의連繫開

변경내용	개정(안)	개정사유
바. 水產物處理加工施設 : 荷役機械·野積場·製水·冷凍·冷藏施設·加工工場·販賣場 및 水產物倉庫 사. 漁業用通信施設 : 陸上無線電話 및 漁業氣象信號施設 (新設)	사. 水產物處理加工施設 : 荷役機械·野積場·製水·冷凍·冷藏施設·加工工場·販賣場 아. 漁業用通信施設 : 陸上無線電話·電話施設, 漁業氣象信號施設 자. 漁港管理施設 : 管理事務所 및 監視所, 船舶保管施設, 船舶接岸施設, 機資材倉庫, 기타 漁港管理上 필요한施設 차. 漁港淨化施設 : 公害防止를 위한 導水施設, 廢油·廢船處理施設, 기타의 淨化施設	○ 發必要 - 漁港管理 效率化를 위해 관리사무소, 감시소, 선박보관 시설등 신설 - 港內 汚染, 廢油防止 및 除去施設 新設, FRP船舶등 廢船處理가豫想되므로 이에 對處
(新設) 아. 船員厚生施設 : 宿泊所·浴場·診療所 및 船員休憩所	3. 厚生福祉施設 가. 漁民厚生施設 : (現行과 같음) 나. 레저施設 : 낚시터, 遊漁船, 모타보트 기타 레저施設 다. 漁港環境整備施設 : 廣場, 造景, 기타 漁港의 環境整備를 위한 施設	○ 2000年代에 漁港이 漁村定住圈의 中心이 되기 위해 厚生福祉施設 新設 - 漁民健康管理를 為한 保健·衛生施設 및 住民의 休息空間 마련
③이 法에서 “漁港修築事業”이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漁港의 調査와 기본계획 및 整備計劃에 의하여 行하는 漁港施設의 新築·增築·改築·補修·除去 또는 漁港區域안의 土地의 崩壊나 土砂의 流入等을 防止하는 事業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漁港施設事業”이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에 의하여 行하는 漁港施設의 新築·增築·改築·補修·除去 또는 漁港區域안의 土地의 崩壊나 土砂의 流入防止, 汚濁水의 原因이 되는 堆積物質의 排除, 汚濁水의 淨化를 위하여 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第5條(漁港의 種類) 漁港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第1種漁港 : 利用範圍가 全國的인 漁業의 根據地 第2種漁港 : 利用範圍가 地方的인 漁業의 根據地 第3種漁港 : 漁場의 開發, 漁船의 待避에 必要한 離島 또는 僕地에 所在하는 漁業의 根據地	第3條(漁港의 種類) 漁港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第1種漁港 : 利用範圍가 全國的인 漁業의 根據地 第2種漁港 : 利用範圍가 地方的인 漁業의 根據地 第3種漁港 : 漁場의 開發, 漁船의 待避에 필요한 島嶼 또는 僕地에 所在하는 漁業의 根據地	○ 第5條를 第3條로 조정함 ○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第4條(漁港의 指定 및 解除) ①水產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漁港의 名稱·種類 및 區域을 定하여 漁港을 指定한다.</p> <p>②水產廳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p> <p>③水產廳長은 漁港이 事情의 變更 其他 特別한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道知事의 意見과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한 內容을 變更하거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p> <p>④水產廳長은 港灣法의 指定에 의한 指定港을 漁港으로 指定하거나 그 管理機能을 定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⑤水產廳長이 漁港을 指定, 變更 또는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4條(漁港의 指定 및 解除) ①第1種 및 第3種 漁港은 水產廳長이, 第2種 漁港은 管轄 市·道知事が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漁港의 名稱·種類 및 區域을 정하여 指定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漁港의 與件變化 기타 特別한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된 內容을 變更하거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p>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第1種 또는 第3種 漁港은 市·道知事의, 第2種 漁港은 市長·郡守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p> <p>④水產廳長은 港灣法의 指定에 의한 指定港을 漁港으로 指定하거나 그 管理機關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⑤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을 指定·變更·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種漁港에 대한 指定, 變更, 解除權限을 市·道知事로 法律에 明示
<p>第6條(漁港의 管理) 第1種 및 第3種漁港은 水產廳長이, 第2種漁港은 道知事が 各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維持 管理하여야 한다.</p>	<p>第5條(管理廳) 第1種 및 第3種漁港은 水產廳長이, 第2種漁港은 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各各 管理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6條을 5條로 조정함. ○ 2種漁港 管理廳을 市·道知事로 法律로 規定하고, 補修補強 性格이 있는 “維持” 概念을 刪除함.
<p>第3條(事業所) ①漁港의 修築事業 및 管理業務를 行하게 하기 為하여 水產廳長 所屬下에 漁港修築事業所(이하 “事業所”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6條(事業所) ①漁港의 施設事業 및 管理業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水產廳長 所屬下에 漁港施設事業所를 둘 수 있다.</p> <p>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7條(漁港審議會) ①漁港의 指定과 漁港修築事業에 관하여 水產廳長과</p>	<p>第7條(漁港審議會) ①漁港의 指定等 重要事項에 관하여 水產廳長과 市·</p>	

개정내용	개정내용(안)	개정사유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水產廳과 서울特別市 · 釜山市 또는 道(이하 “道”라 한다)에 漁港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新設)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水產廳과 直轄市 또는 道(이하 “市 · 道”라 한다)에 漁港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審議한다. 1. 漁港의 指定 · 變更 및 解除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 3. 기타 漁港管理에 관한 重要한 事項 ③審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令에 規定되어 있는 審議會 審議 事項中 主要事項을 法律로 規定함.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施設計劃) ①水產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調查를 實施하고 施設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은 이를 基本計劃과 整備計劃으로 區分한다. (新設)	第8條(施設計劃의 樹立) ①管理廳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을 指定하거나 與件이 變動되어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漁港調查를 實施하여 施設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은 당해 漁港의 與件에 따라 基本計劃과 整備計劃으로 區分 樹立할 수 있다. ③管理廳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을 樹立할 때는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미리 당해 住民 및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事項이라고 認定되거나 不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④第3項에 관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漁港施設計劃은 當該 住民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事前에 住民의 意見聽取義務化 · 行政節次 規定 履行 ○細部節次에 關한 事項이므로 大統領令에 委任 ○漁港修築事業 施行者의 明確化 ○管理廳이 아닌 者도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할 수 있으므로 但書規定 削除 ○民資로 漁港開發을 推進할 수 있는 法
第9條(事業施行者) 漁港修築事業은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水產業協同組合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項 第2號 다, 라, 마, 바, 아의 施設은例外로 한다.	第9條(事業施行者) 漁港施設事業은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管理廳이 하여야 한다.	
第10條(事業計劃書) 地方自治團體, 水產業協同組合 및 前條 但書의 規定에	第10條(管理廳이 아닌 者의 事業施行) ①管理廳이 아닌 者가 漁港施設事業의	

第8條(事業者에 의한 施設의 規定)	第8條(事業者에 의한 施設의 規定)(안)	第8條(事業者에 의한 施設의 規定)의 根據
의한 施設者(이하 “事業者”라 한다) 가 漁港修築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 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 에 따라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水產 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2 條第2項第2號아의 施設을 하고자 하 는 事業者는 例外로 한다. (新 設)	施行을 하고자 할 때에는 事業計劃書 를 作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的根據 마련 ○水產廳長 承認事項 을 管理廳의 許可 事項으로 함. ○民資開發은 事前計 劃된 範圍內에서 施行도록 하게 함.
(新 設)	②管理廳이 第1項의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 範圍內에서 許可하여야 한 다. 다만, 第2條第2項의 機能施設 및 厚生福祉施設에 대한 許可是 例外로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事業 으로 인하여 생긴 漁港施設은 第24條 의 竣工檢查를 받은 時點을 基準으로 그 漁港을 管理하는 管理廳에 歸屬한 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漁港 施設은 例外로 한다.	○漁港施設은 公公用 施設이므로 私人의 所有로 할 수 없도 록 함.
(新 設)	第11條(兼業漁港施設) ①管理廳은 漁港 施設의 一部가 다른 工作物의 效用을 兼하는 경우에는 그 使用者로 하여금 당해目的에 沮害되지 않는 範圍內에 서 필요한 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 다. ②管理廳은 다른 工作物로서 漁港施 設의 效用을 兼하는 경우에는 그 施 設에 관한 工事와 維持를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에 관 한 施設은 이를 漁港施設事業으로 본 다. 第12條(事業費의 補助) ①水產廳長은 市·道知事が 第2種漁港 施設事業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業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管理廳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 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豫算의 範圍안 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漁港施設이 他用途 에, 他施設이 漁港 機能에 使用되는 경우가豫想되므로 이에 대한 工事施 行 根據 마련 ○事業費의 補助對象 을 市·道知事와 管理廳이 아닌 事 業者로 區分함. ○民間資本에 依해 漁港을 開發할 경 우 事業費 一部를 支援 할 수 있는
第11條(事業費의 補助) 水產廳長은 漁 港修築事業을 施行하는 事業에 대하 여 必要한 때에는豫算의 範圍안에서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법률	개정(안)	개정자유
第12條(費用分擔) 漁港施設을 다른用途에利用하는 때에는 그漁港施設의管理에所要되는費用은管理機關과利用者が協議하여分擔하게할수있다.	(削除)	<p>根據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事業費全部를補助하는경우는現實에符合되지않으므로“全部”를削除
第13條(漁港修築事業의委託)事業者は水產廳長의承認을얻어漁港修築事業의一部를大統領令이定하는者에게委託할수있다.	第13條(管理廳이아닌者的事業委託) 漁港施設事業施行者は管理廳의承認을얻어漁港施設事業중第2條第2項의機能施設및厚生福祉施設을委託할수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漁港施設을다른用途에使用케하는경우는第20條의2및第21條에規定하였으므로削除 ○“事業者”를“漁港施設事業施行者”로하고“水產廳長”을“management”으로하여委託範圍를機能施設과厚生福祉施設로함.
(新設)	第14條(權利義務의移轉)이法의規定에의한許可또는承認으로인하여發生한權利또는義務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移轉할수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agement이아닌者가許可또는承認으로發生한權利,義務事項을移轉할수있도록規定
第14條(事業計劃의變更 및廢止等)事業者が事業計劃書를變更 또는廢止하거나그施行을一時停止하고자할때에는水產廳長의承認을얻어야한다.	第15條(事業計劃의變更 및廢止等)管理廳이아닌漁港施設事業施行者はmanagement의承認을받은후가아니면事業計劃을變更 또는廢止하거나그施行을停止하여서는안된다. 다만,輕微한變更으로農林水產部令에서정하는基準에適合한것에한해서는이를省略할수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事業者”를“management이아닌者”로하고management이아닌者가事業施行時任意로變更,廢止할수있도록함.
第15條(承認의取消)水產廳長은事業者が다음各號의1에該當할때에는그事業計劃의承認을取消할수있다.	第16條(許可또는承認의取消等)①management이아닌者的事業施行時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경우에는이法또는이法에의한命令이나條例에의한許可또는承認의取消,그effort의停止,事業의中止,工作物의改築等필요한處分을할수있다. 1.指定期日안에事業을着手하지아니한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產廳長”을“management”으로하고,“事業計劃承認의取消”를“이法에의한命令이나條例에의한許可等의取消等”으로變更
1.指定期日안에事業을着手하지아니한때 2.竣工의能力이없다고認定된때 3.이法또는이法에의한命令에違反한때		

한국어	영어(한국어)	개정사유
(新 設)	<p>2. 竣工의 能力이 없다고 認定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의한 處分에 違反한 때</p> <p>②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關係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既得權에 대한 管理廳의 取消權을 制限함으로써 行政處分에 慎重을 기하도록 함.
(新 設)	<p>第16條의2(公益을 위한 監督處分) ①管 理廳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條例에 의한 許可 또는 承認을 받는 者에 대하여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漁港의 狀況變更이나 漁港의 効率的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漁港施設事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公共의 危害를 輕減하거나 除去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公共의 利益이 될 事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p>②第16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漁港施設事業은 公共用施設事業이므로 公益上 必要한 때에는 許可·또는 承認等의 取消等을 할 수 있도록 함.
第16條(土地,水面등의 使用) ①國家 또는 事業者가 漁港의 修築事業의 施行 또는 維持管理를 위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 水面等에 出入하거나 材料의 積載場으로 一時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10日前에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그 뜻을 通知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使用料를 支給한다.	<p>第17條(土地,水面등의 使用) ①管理廳이 아닌 事業施行者 또는 管理廳의 命令이나 委任을 받은 者는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維持management를 위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 水面等에 出入하거나 材料의 積載場·道路 또는 假道로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不得已한 경우에는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使用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日時와 場所를 5日前에 그 土地나 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土地나 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不不得已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家 또는 事業者”를 “管理廳 또는 管理廳의 命令이나 委任을 받은 者”로 함. ○漁港施設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通報期限 短縮 및 通報不可能時 土地,水面等의 使用權 確保

개정내용	개정정정(안)	개정사유
<p>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 水面의 使用으로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第21條(非常災害時의 土地등의 使用)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는 天災地變 其他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管理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 家屋, 船舶, 其他의 工作物을 一時 使用하거나 工作物 其他 障害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土石, 竹木, 運搬具 其他 物件을 一時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新設)</p>	<p>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나 水面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이를 指示하여야 한다.</p> <p>(削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私有財產 保護를 위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는 證票를 携帶하도록 함. ○行政處分에 依한 損失補償은 第19條에 別途 規定
	<p>第18條(非常災害時의 土地等의 使用) ①管理廳은 天災地變 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管理에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 家屋, 船舶 기타의 工作物을 一時 使用하거나 工作物 기타 障害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土石, 竹林, 運搬具 기타 物件을 一時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p> <p>第19條(公用分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管理廳은 第17條第1項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行為 또는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그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管理廳이 決定한 金額을 損失을 받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供託하고 相對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支給 또는 供託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土地收用委員會 또는 水產調整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를 “管理廳”으로 하고 損失補償에 대해서는 第19條에 別途 規定 ○漁港施設事業 遂行으로 他人의 土地,水面等을 使用할 경우 協議·裁決等의 節次를 거쳐 損失補償토록 함.

현 행	개정(아)	개정사유
(新設)	<p>④管理廳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이 아닌 者가 事業施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施行하는 者에게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19條의2(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第19條의 規定은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處分으로 인한 損失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管理廳이 아닌 者가 事業施行할 경우에도 그 事業者로 하여금 損失補償도록 規定 ○管理廳의 公益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規定
(新設)	<p>第20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 ①管理廳은 漁港施設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漁港機能에 反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그 使用을 許可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할 경우에는 漁港機能 保全에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施行令에 規定된 “使用許可”를 法律로 정함. ○漁港機能 保全을 위해 許可의 取消·使用停止等을 命할 수 있도록 함.
(新設)	<p>第20條의2(歸屬漁港施設의 使用) ①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歸屬된 漁港施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無償으로 使用 또는 利用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屬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利用하는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他人으로 하여금 使用 또는 利用하게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歸屬漁港施設에 대한 無償使用 根據 規定 ○歸屬漁港施設에 대해 許可받은 者以外의 者도 使用도록 規定 ○使用料의 徵收는 物價變動등으로, 變化가 자주 豫想되므로 部令으로 規定
第20條(使用料의 徵收) ①水產廳長은 大統領令으로, 道知事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漁港의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p>第21條(使用料의 徵收) ①水產廳長은 農林水產部令으로, 市·道知事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港施設의 使用, 利用 또는 占用者(以下 “使用者”라 한다)로부터 使用料, 利用料, 占用料等(以下 “使用者”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p> <p>②管理廳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③管理廳은 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使用料免除對象 根
(新設)		

개정(안)	개정 사유
(新設) 用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	據規定 ○使用料등 收入財源의 所管區分 規定
(新設) 第21條의2(使用料등의 歸屬) 漁港에 관한 使用料 기타의 收益은 水產廳長이 이를 賦課하거나 徵收한 경우에는 國家의, 市·道知事가 이를 賦課하거나 徵收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第22條(管理廳이 아닌 者의 使用料) ① 第2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使用 또는 利用하게 하는 者는 그 漁港施設을 使用 또는 利用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料率 및 徵收等에 관한 事項을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管理廳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料率이 부당하거나 使用者의 便益을 沮害하는 때에는 당해 料率의 變更, 施設의 使用 또는 利用方法의 變更, 기타 漁港의 管理運營의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管理廳이 아닌 者가 漁港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使用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함. ○管理廳이 아닌 者가 不當 料率등 使用者에게 不利益을 줄 경우 이를 是正할 수 있는 根據規定 ○“水產廳長”을 “管理廳”으로 하고 “事業者”를 “management이 아닌 者”로 함.
第17條(監督, 報告) ①水產廳長은 監督에 必要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그 事業의 施行에 관한 事項 또는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水產廳長은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事業所등에서 質問하거나, 書類, 薄冊 또는 工事內容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8條(竣工檢查) 事業者가 漁港修築事業을 竣工한 때에는 遷滯없이 水產廳長의 竣工檢查를 받아야 한다.	○“事業所”는 事業場에 包含되는 概念으로 削除 ○“事業者”를 “management이 아닌 者”로 함.
第23條(監督, 報告) ①管理廳은 管理廳이 아닌 者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한 경우 그 事業에 대하여 監督이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事業施行에 관한 事項 또는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管理廳이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등에서 質問하거나 書類, 薄冊등을 열람하거나 또는 工事內容을 確認하게 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4條(竣工檢查) 管理廳이 아닌 者가 漁港施設事業을 竣工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理廳의 竣工檢查를 받아야 한다.	○“事業者”를 “management이 아닌 者”로 함.

행	개정(안)	개정(우)
第19條(財產의 登記) ①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는 施設計劃에 따라 漁港修築事業에서 생긴 土地 또는 工作物을 最終竣工日로부터 1年内에 登記하여야 한다.	第25條(財產의 登記) 管理廳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事業으로 생긴 土地 또는 施設物이 完工되었을 때는 最終完工日로부터 1年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漁港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完工이전이라도 登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를 “管理廳”으로 하고 漁港施設事業은 最終完工하는데 數年이 所要되므로 完工以前이라도 必要時 登記할 수 있도록 함.
第22條(漁港臺帳)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26條(漁港臺帳) ①管理廳은 管理하는 漁港에 관한 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②漁港臺帳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를 “管理廳”으로 하고 漁港臺帳 記載事項은 “大統領令”을 “部令”으로 規定 第32條第2項에서 市·道知事は 2種漁港施設計劃樹立 및 變更時 미리 水產廳長의 調整을 받도록 規定 私人에 대한 行爲制限事項으로 法에서 規定
(新設)	(削除)	
(新設)	<p>第27條(禁止行爲)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港區域안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漁港施設을 破損하거나 破損할 우려가 있는 行爲 有毒物 또는 動物의 屍體를 버리는 行爲 漁港施設을 무단埋立 또는 占有하거나 障碍物을 放置하여 漁港 利用을 沢害하는 行爲 多量의 土石 또는 汚物을 버리거나 漁港의 深度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行爲 其他 漁港의 保全 또는 그 利用에 支障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爲 <p>第28條(代執行等) 管理廳은 漁港機能保全上 필요하거나 第27條의 規定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法執行의 實效性確保를 위해 原狀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p>違反한 경우에는一定한期間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으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節次에 따라 필요한 處分을 취할 수 있다.</p> <p>第29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承認 없이任意로 事業計劃을 變更 또는 廢止하거나 施行을 停止한 者 2. 第16條第1項 및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處分이나 命令에違反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 또는 處分을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거나 이를 妨害한 者 4.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報告 또는 資料提出 要求를 拒否하거나 工事內容確認을 拒否한 者 <p>第29條의2(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한 者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水域內에서 禁止行爲를 한 者 3.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原狀回復을 拒否한 者 <p>第30條(兩罰規定) 法人 또는 個人的代理人, 雇傭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事務에 관하여 第29條 내지 前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犯則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罰金을 科한다.</p> <p>第31條(權限의 委任) 水產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p>	<p>回復의 命令과 行政代執行을 할 수 있도록 根據 規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行政行爲의 義務履行과 法執行의 實效性 確保를 위해 罰則을 強化함.
(新設)		
第28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自然人の 代理人 其他 使用人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の 業務에 관하여 前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도 罰金刑을 科한다.		
第26條(權限의 委任) 水產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		

한 헌	한 정 (안)	개정 사유
<p>에게, 道知事은 市長 또는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24條(協議 등) 漁港區域안에서 이 法에 規定한 以外의 事業을 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管掌하는 主務官廳은 미리 水產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新 設)</p>	<p>知事에게 市·道知事은 市長 또는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32條(協議 및 調整) ①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港區域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 都市計劃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이 免許 또는 許可等을 하고자 하거나 都市計劃을 決定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② 市·道知事은 第2種漁港을 指定 또는 解除하거나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을樹立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水產廳長의 調整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係法律등을 具體化함으로써 法運用에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함.
<p>(新 設)</p>	<p>第3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漁港區域안에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이樹立되었을 때에는 公有水面埋立法 第29條의 公有水面埋立 協議 및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道知事が 2種漁港의 管理廳으로 規定됨에 따라 全國漁港의 總括調整을 위하여 2種漁港에 대한 指定·解除·施設計劃을 事前에 水產廳長의 調整을 받도록 함. ○ 漁港施設事業은 漁港區域內에서 이루어지므로 業務의 效率의in 遂行을 위하여 關係機關의 協議 및 承認 節次를省略토록 함. <p>※ 公有水面埋立法 第29條(國家가 施行하는 埋立)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埋立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建設部長官과 協議하거나 承認을 받아야 한다.</p>
<p>第25條(漁港以外의 港灣)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以外(港灣法에 의한 指定港은 除外한다)의 港灣을 目的으로 修築하는 경우에는 第9條乃至第11條 및 第17조의 指定을 準用한다.</p>	<p>(削 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漁港以外의 港灣은 이 法에서 規定하는 漁港이 아니므로 削除

제29조(準用規定) 漁港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港灣法을 準用한다.	(削 除)	○이 法과 港灣法은 法의 適用範圍가 相異하므로 削除
第30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削 除)	○大統領令은 本 法의 施行을 당연히 規定하는 事項이므로 別途 條文 不要
附 則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實施한 漁港調查 및 漁港修築事業은 이 法에 의하여 實施된 것으로 본다. (新 設)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實施한 漁港調查 및 漁港施設事業은 이 法에 의하여 實施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令의 改正) 公有水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3條의 내용중 “漁港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1·3種漁港區域內의 公有水面은 水產廳長(이하 “漁港管理廳”이라 한다)이 管理한다”를 追加한다. 2. 第4條第2項의 내용중 “또는 漁港管理廳”을 追加한다.	○漁港區域內의 公有水面管理廳長으로 하여 漁港區域內의 公有水面管理業務를 一元화
(新 設)	④(公有水面管理法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 規定에 의하여 1·3種漁港區域內의 公有水面에 대하여 行한 地方管理廳의 占有許可는 이를 水產廳長이 行한 것으로 본다.	○既存行爲에 대한 經過措置